

서울특별시립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안)

의안 번호	627
----------	-----

제안년월일 : 2019년 4월 24일

제안자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1. 대안의 제안경위

- 2019년 3월 26일 김인호의원이 대표발의하고 3월 29일 시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립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건을 일괄 심사한 결과, 모두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각 조례안의 내용을 통합·보완하여 하나의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함.

2. 대안의 제안이유

- 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이하 제로페이) 이용자에게 한시적으로 시립체육시설 입장료 및 개인연습사용료, 수강료를 감면하고, 사용료 및 입장료 반환 사유인 천재지변의 범위에 미세먼지를 포함하며, 서울월드컵경기장 내 연회장의 사용료 조정 및 창동운동장 등 체육시설의 명칭·기능·위치 등을 현행화하여 현행 조례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개선하고자 함.

3. 대안의 주요내용

- 가. 소상공인의 결제 수수료 부담 경감을 목적으로 도입된 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제로페이”)의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해당 결제시스템

이용자에게 한시적으로 시립체육시설 입장료 및 개인연습사용료, 수강료를 감면하고자 함

- 나. 시립체육시설의 사용료 및 입장료 반환 사유인 천재지변의 범위에 미세먼지도 포함함으로써 조문 해석의 혼란을 방지하고, 단체와 개인의 형평성을 위하여 개인연습사용료에 대하여만 반환을 불허하는 규정을 삭제하고자 함
- 다. 서울월드컵경기장 내 다목적구장 등 신규 설치시설에 대한 사용료 조항을 신설하고, 서울월드컵경기장 내 연회장의 타 유사시설 대비 높은 사용료의 조정을 통하여 시설 이용에 따른 시민의 부담을 완화하고자 함
- 라. 창동운동장 등 기존시설의 명칭·기능·위치를 현행화하는 등 현행 조례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개선하고자 함.

4.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등
- 나. 예산조치 : 협의완료
- 다. 기 타 : 신·구조문대비표 참조

서울특별시립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립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감액한다”를 “감액할 수 있다”로 하고,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소상공인의 결제수수료 부담을 줄이고자 중소기업부장관이 지정한 운영기관이 운영하는 결제시스템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 입장료를 결제하는 자 : 100분의 30 범위에서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감액.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라 입장료를 감액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제10조제1호에 마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마. 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으로 개인연습사용료를 결제하는 자 : 100분의 10 범위에서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감액. 다만, 가목부터 라목 중 어느 하나에 따라 개인연습사용료를 감액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제10조제2호에 바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바. 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으로 수강료를 결제하는 자 : 100분의 5 범위에서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감액

제11조제1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천재지변”을 “천재지변 (미세먼지를 포함한다)”으로, “경기”를 “개인연습, 경기”로, “별표 3”을 “별표 2”로 한다.

제23조제2항 중 “창동운동장”을 “창동문화체육센터”로 한다.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2를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3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 결제에 대한 감면 적용 유효기간) 제9조제3항제3호 및 제10조제1호마목, 제10조제2호바목의 개정규정은 2019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별표 1]

서울특별시립체육시설(제2조 관련)

명칭	시 설 명	기 능	위 치
잠실종합 운동장	올림픽주경기장	육상, 축구, 럭비, 각종행사	서울시 송파구 올림픽로 25 (잠실동 10)
	육상연습장 (보조경기장)	육상, 축구, 럭비, 각종행사	
	실내체육관	농구, 배구, 각종경기 및 행사	
	실내체육관 내 보조체육관	농구, 배구	
	제1수영장	수영	
	제2수영장	수영	
	체조관	생활체육교실 운영	
	야구장	야구	
	인라인하키장	인라인하키, 각종행사	
	풋살구장	풋살, 각종행사	
서울 월드컵 경기장	주경기장	축구, 각종행사	서울시 마포구 월드컵로 240(성산동 515)
	보조경기장	축구, 각종행사	
	풋살구장	풋살, 각종행사	
	다목적구장	축구, 각종행사	
	위밍업실	축구, 각종행사	
	2002FIFA 월드컵기념관	2002FIFA월드컵 및 축구 관련 전시	
서남권 돔구장	야구장	야구, 각종행사	서울시 구로구 경인로 430 (고척동 63-6 외 13필지)
	수영장	수영	
	축구장	축구	
	체력단련장	체력단련	
	풋살구장	풋살, 각종행사	
	보행광장	각종행사	
목동 운동장	주경기장	육상, 축구, 각종행사	서울시 양천구 안양천로 939(목1동 914)

명칭	시 설 명	기 능	위 치
	야구장	야구	
	실내빙상장	스케이트, 아이스하키	
	다목적구장	풋살, 연식야구, 소프트볼	
효창 운동장	축구장	축구, 필드하키 및 육상	서울시 용산구 효창원로 177-15 (효창동 3)
장충 체육관	주체육관	농구, 배구, 각종경기 및 행사	서울시 중구 동호로 241 (장충동2가 200-102)
	보조체육관	농구, 배구, 각종경기 및 행사	
	다목적실1	생활체육, 문화예술교실운영	
	다목적실2	생활체육, 문화예술교실운영	
뚝섬승마 훈련원	승마훈련원	승마	서울시 성동구 서울숲2길 8-15 (성수동1가 685-6)
구의 야구공원	간이야구장	야구	서울시 광진구 위키힐로 57-30 (구의동 164-5)
신월 야구공원	간이야구장	야구	서울시 양천구 남부순환로 64길 26 (신월동 149-20)
창동문화 체육센터	수영장	수영, 각종경기	서울시 도봉구 노해로 69길 132 (창동 1-6))
	체력단련장	체력단련	
	실내체육관	농구, 탁구, 합기도, 각종경기 및 행사	

[별표 2]

개인사용료(제7조제1항 관련)

1. 개인연습사용료

(1일, 2시간, 단위 : 원)

시 설		금 액	
체육관 및 보조체육관	잠실실내체육관, 잠실보조체육관, 장충체육관, 장충체육관 내 보조체육관, 창동실내체육관	4,000~8,000	
야구장	잠실야구장, 목동야구장, 서남권 돐구장	4,000~8,000	
축구장	서울잠실올림픽주경기장, 잠실보조경기장, 서울월드컵주경기장, 서울월드컵보조경기장, 목동주경기장, 효창운동장, 창동축구장, 서남권 돐구장	4,000~8,000	
풋살구장	잠실풋살구장, 목동다목적구장, 서울월드컵경기장 풋살구장, 서남권 돐구장 풋살구장	4,000~8,000	
육상장(트랙)	잠실보조경기장, 목동주경기장, 효창운동장	1,000~2,000	
체력단련장	창동문화체육센터 체력단련장, 서남권 돐구장 체력단련장	4,000~8,000	
실내골프연습장	잠실 제1수영장 실내골프연습장	성인	4,000~8,000
		청소년	3,000~6,000
	스크린 골프연습장	9홀	7,000~14,000
		18홀	14,000~28,000
체육공원	파크골프장	성인	4,000~8,000
		청소년	3,000~6,000
		어린이	2,000~4,000
체조관	잠실체조관	3,000~6,000	
수영장	잠실 제1수영장, 잠실 제2수영장	성인	4,000~8,000
		청소년	3,000~6,000
		어린이	2,000~4,000
	창동문화체육센터 수영장, 서남권 돐구장 수영장	성인	3,500~7,000(1시간)
		청소년	2,000~4,000(“)
		어린이	1,500~3,000(“)
빙상장	목동실내빙상장	성인	4,000~8,000
		청소년	3,500~7,000
		어린이	3,000~6,000
승마장	독섬승마훈련원	성인·청소년	40,000~80,000(1시간)
		어린이	25,000~50,000(“)
비 고	1. 토요일·공휴일에 이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용료의 100분의 30을 가산한다. 2. 천연잔디가 식재된 경기장·운동장에 대하여는 그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해당 시설관리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시설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3. 월 개인연습사용권은 해당 사용료에 20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4. 체육활동을 위한 장비·장구 등에 대한 대여료는 규칙으로 정한다. 5. 위 표에서 정하지 아니한 시설에 대한 개인연습사용료에 관하여는 위 표의 시설 및 일반 체육시설의 사용료를 준용한다.		

2. 생활체육교실 프로그램 수강료

가. 잠실종합운동장

(단위 : 원)

시 설	대 상	수 강 료					
		주1회	주2회	주3회	주4회	주5회	주6회
제1·2 수영장	성 인	14,000 ~21,000	28,000 ~42,000	42,000 ~63,000	56,000 ~84,000	63,000 ~94,500	68,600 ~102,900
	청소년	8,000 ~12,000	16,000 ~24,000	24,000 ~36,000	32,000 ~48,000	36,000 ~54,000	39,200 ~58,800
	어린이	6,000 ~9,000	12,000 ~18,000	18,000 ~27,000	24,000 ~36,000	27,000 ~40,500	29,400 ~44,100
체력단련장	44,000~66,000						
골프연습장	성 인	40,000~60,000					
	청소년	30,000~50,000					
올림픽 주경기장 및 체조관	성 인	7,500 ~11,200	15,000 ~22,500	22,500 ~33,700	30,000 ~45,000	33,700 ~50,500	36,700 ~55,000
	청소년	5,600 ~8,400	11,200 ~16,800	16,800 ~25,200	22,400 ~33,600	25,200 ~37,800	27,400 ~41,100
	어린이	4,700 ~7,000	9,400 ~14,100	14,100 ~21,100	18,800 ~28,200	21,100 ~31,600	22,900 ~34,300
비 고	각 프로그램은 1개월을 기준으로 하고, 1일 수강시간은 1시간으로 한다. 다만, 골프연습장 생활체육프로그램 수강은 월 개인사용료 이용자에 한한다.						

나. 서남권 돛구장

(단위 : 원)

시설	대상	수강료					
		주1회	주2회	주3회	주4회	주5회	주6회
수영장	성인	14,000 ~21,000	28,000 ~42,000	42,000 ~63,000	56,000 ~84,000	63,000 ~94,500	68,600 ~102,900
	청소년	8,000 ~12,000	16,000 ~24,000	24,000 ~36,000	32,000 ~48,000	36,000 ~54,000	39,200 ~58,800
	어린이	6,000 ~9,000	12,000 ~18,000	18,000 ~27,000	24,000 ~36,000	27,000 ~40,500	29,400 ~44,100
체력단련장	44,000~66,000						
비고	각 프로그램은 1개월을 기준으로 하고, 1일 수강시간은 1시간으로 한다.						

다. 목동실내빙상장

(단위 : 원)

구 분	수 강 료	비 고
성 인 반(주 3회)	73,000~109,500	1일 1시간, 1개월 기준
초·중·고반(주 2회)	73,000~109,500	
초·중·고반(주 3회)	88,000~132,000	
초·중·고반(주 5회)	140,000~210,000	
주말반(주 1회, 1일 2시간)	73,000~109,500	

라. 특심승마훈련원

(단위 : 원)

이용자	수강료	비고
성인·청소년 및 어린이	300,000 ~390,000	1. 1일 1시간, 1개월 기준 2. 수강료 외에 별도의 입장료를 납부하여야 하며, 입장료는 별표 2의 제1호의 개인연습사용료를 적용한다.

마. 창동문화체육센터

(단위 : 원)

시설	대상	수강료					
		주1회	주2회	주3회	주4회	주5회	주6회
수영장	성인	15,400 ~23,100	30,800 ~46,200	46,200 ~69,300	61,600 ~92,400	69,300 ~103,900	75,400 ~113,100
	청소년	8,800 ~13,200	17,600 ~26,400	26,400 ~39,600	35,200 ~52,800	39,600 ~59,400	43,100 ~64,600
	어린이	8,200 ~12,300	16,400 ~24,600	24,600 ~36,900	32,800 ~49,200	36,900 ~55,300	40,100 ~60,100
체력단련장		44,000~66,000					
비고	각 프로그램은 1개월을 기준으로 하고, 1일 수강시간은 50분으로 한다.						

바. 장충체육관

시설	수강료
다목적실	100,000(상한액)
체력단련장	44,000~66,000
비고	1. 각 프로그램은 1개월을 기준으로하고, 1일 수강시간은 1시간으로 한다. 2. 다목적실의 수강료는 월 상한액임.

3. 체육시설 프로그램 이용 참가비

시설	종별	사용기준	금액(원)	비고
공통	<u>체육시설 프로그램 이용 참가비</u>	1인 1회당	1,000 ~20,000	재료비 포함

※ 전용사용, 개인연습사용 및 생활체육교실 등 사용료 또는 수강료가 별도로 정해진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별표 3]

전용사용료(제7조제1항 관련)

(1일당, 주간, 단위 : 원)

시 설		체 육 경 기	체육행사	공공·문화예술· 일반행사	기타 사용	
잠실 종합 운동장	실내체육관	120,000~156,000	180,000~234,000	420,000~546,000		
	실내체육관 내 보조체육관	40,000~52,000	60,000~78,000	132,000~171,600		
	제1·2 수영장	09 : 00 - 18 : 00	780,000~1,014,000	1,170,000~1,521,000	1,500,000~1,950,000	
		09 : 00 - 12 : 00	260,000~338,000	390,000~507,000	500,000~650,000	
		12 : 00 - 18 : 00	660,000~858,000	990,000~1,287,000	1,300,000~1,690,000	
	야구장	210,000~273,000	315,000~409,500	504,000~655,200		
	올림픽주경기장	460,000~598,000	690,000~897,000	1,116,000~1,450,800		
	육상연습장(보조경기장)	140,000~182,000	210,000~273,000	336,000~436,800		
	체조관	40,000~52,000	60,000~78,000	132,000~171,600		
	인라인하키장(1시간)	40,000~52,000				
풋살구장(2시간)	30,000~39,000					
서울 월드컵 경기장	주경기장	460,000~598,000	690,000~897,000	1,020,000~1,326,000		
	보조경기장(2시간)	140,000~182,000	210,000~273,000	336,000~436,800		
	풋살구장(1면, 2시간)	30,000~39,000	45,000~58,500	60,000~78,000		
	다목적구장(2시간)	63,000~81,900				
	워밍업실(1면, 2시간)	57,000~74,100				
	회의실(4시간)	388,000~504,400				
	연회장 (")	715,000~929,500				
	VIP룸(")	1,050,300~1,365,300				
	가변무대	749,000~973,700				
	3층테크,광장(4시간, m ² 당)	200~260				
	회원실식당(4시간)	630,200~819,200				
	회원실 (4시간)	A1	1등석관람료 × 좌석수 × 0.3	1등석관람료 × 좌석수 × 0.45	87,600 ~113,800	
		A2			77,800 ~101,100	
A3		63,400 ~82,400				
A4		61,800 ~80,300				
A5		45,600 ~59,200				
시 설	체 육 경 기	체육행사	공공·문화예술· 일반행사	기타 사용		

서남권 돔구장	야구장		210,000~273,000	315,000~409,500	504,000~655,200		
	축구장	1일	120,000~156,000	180,000~234,000	288,000~374,400		
		2시간	48,000~62,400	72,000~93,600			
	수영장	09:00~18:00	468,000~608,400	702,000~912,600	900,000~1,170,000		
		09:00~12:00	156,000~202,800	234,000~304,200	300,000~390,000		
		12:00~18:00	396,000~514,800	594,000~772,200	780,000~1,014,000		
	보행광장(4시간, m ² 당)		200~260				
	풋살구장(1면, 2시간)		30,000~39,000	45,000~58,500	60,000~78,000		
볼펜(2시간)		88,000 (야구경기를 목적으로 사용할 경우는 별도로 징수하지 아니한다)					
목동 운동장	주경기장	1일	120,000~156,000	180,000~234,000	288,000~374,400		
		2시간	48,000~62,400	72,000~93,600			
	야구장	1일	100,000~130,000	150,000~195,000	418,000~543,400		
		3시간	60,000~78,000	90,000~117,000			
	실내빙상장		77,000~100,100 (1시간)	115,500~150,150 (1시간)	5,500,000~7,150,000	110,000 ~143,000 (1시간)	
	다목적구장		30,000~39,000(1면, 2시간)				
효창운동장		1일	120,000~156,000	180,000~234,000	288,000~374,400		
		2시간	48,000~62,400	72,000~93,600			
장충체육관		체육관	120,000~156,000	180,000~234,000	420,000~546,000		
		보조체육관	40,000~52,000	60,000~78,000	132,000~171,600		
		다목적실	18,500~24,000	27,800~36,100	60,600~78,800		
뚝섬승마훈련원		120,000~156,000	180,000~234,000	288,000~374,400			
구의야구공원		1일	70,000~91,000	105,000~136,500	200,000~260,000		
		3시간	42,000~54,600	63,000~81,900			
신월야구공원		1일	70,000~91,000	105,000~136,500	200,000~260,000		
		3시간	42,000~54,600	63,000~81,900			

<p>창동 문화체육센터</p>	<p>실내체육관(3시간)</p>	<p>165,000~214,500</p>	
<p>비고</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토요일·공휴일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전용사용료의 100분의 30을, 조기, 야간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당일 주간 전용사용료의 100분의 30을 각각 가산한다. 다만, 목동실내빙상장의 경우 조기, 야간에도 당일 주간 전용사용료를 적용한다. 2. 1일 기준 대관시에는 사용시간이 초과되는 경우에는 시간당, 주간은 전용사용료의 100분의 10을, 조기, 야간은 전용사용료의 100분의 20을 가산하되, 1시간 미만은 1시간으로 보고, 3시간 이상이 초과되는 때에는 초과시간대의 전용사용료 전액을 징수한다. 다만, 서울월드컵경기장의 경우 주경기장, 보조경기장 및 풋살구장을 제외한 시설에 대하여는 초과시간이 야간인 때에는 시간당 전용사용료의 100분의 25를 가산한다. 또한 인조잔디구장의 시간대관시 사용시간 1시간 초과하는 경우 축구장은 2시간 사용료의 2분의 1, 야구장은 3시간 사용료의 3분의 1을 가산한다. 3. 잠실종합운동장 내 수영장의 다이빙장에 대한 전용사용료는 수영장 전용사용료의 100분의 30을, 보조다이빙장에 대한 사용료는 수영장 전용사용료의 100분의 10을 징수한다. 4. 천연잔디구장의 전용사용시간은 2시간 이내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고, 연장하는 경우의 사용료는 주간 전용사용료의 100분의 30을 추가하여 징수한다. 5. 목동실내빙상장의 경우 30분 단위로도 사용허가를 할 수 있되, 이 경우 전용사용료는 시간당 전용사용료의 100분의 50으로 한다. 6. 시설 내 집기 대여료와 테크·광장 및 그 밖에 체육시설에 부수되는 공용시설에 대한 전용사용료의 산정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 7. 서울월드컵경기장에서 경기장을 대관하지 않고 회원실만을 대관하는 경우 기타 사용란에 명시된 금액을 징수한다. 8. 목동실내빙상장에서 일반행사 중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체육활동을 하는 경우 전용사용료는 기타 사용란에 명시된 금액을 징수한다. 9. 목동다목적구장에서 단일경기로 경기장 전체를 사용하는 연식야구·티볼경기 등을 하는 경우 전용사용료는 2면, 2시간 기준 40,000원~52,000원으로 한다. 		

신 · 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9조(입장료) ①·② (생 략)</p> <p>③ 시장은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입장료를 <u>감액한다</u>.</p> <p>1.·2. (생 략)</p> <p><u><신 설></u></p>	<p>제9조(입장료) ①·② (현행과 같음)</p> <p>③ ----- ----- ---- <u>감액할 수 있다</u>.</p> <p>1.·2. (현행과 같음)</p> <p>3. <u>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소상공인의 결제수수료 부담을 줄이고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지정한 운영기관이 운영하는 결제시스템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 입장료를 결제하는 자 : 100분의 30 범위에서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감액.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라 입장료를 감액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u></p>
<p>제10조(사용료의 감면) 시장은 제7조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p> <p>1. 별표 2 제1호의 개인연습사용료 감면</p> <p>가. ~ 라. (생 략)</p> <p><u><신 설></u></p>	<p>제10조(사용료의 감면) ----- ----- ----- -----.</p> <p>1. ----- -----</p> <p>가. ~ 라. (현행과 같음)</p> <p>마. <u>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으로 개인연습사용료를 결제하는 자 : 100분의 10 범위에서 시장이 정하는 바에</u></p>

현행	개정안
<p>② <u>창동운동장</u>에 관한 제1항 각 호의 사무는 해당 체육시설의 소재지 관할 구청장에게 위임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부칙</p> <p>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p>	<p>② <u>창동문화체육센터</u>----- ----- -----.</p> <p style="text-align: center;">부칙</p> <p>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p> <p>제2조(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 결제에 대한 감면 적용 유효기간)</p> <p>제9조제3항제3호 및 제10조제1호마목, 제10조제2호바목의 개정규정은 2019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p>